

물가안정용 정부 비축수산물 운송용역(제주수매분)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수협중앙회 정부비축사업단 담당자 ☎ 02-2240-0172, 0191
FAX 02-2240-0197

- 주소: 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8, 5층 501호

○ 수요기관: 수협중앙회 정부비축사업단 ☎ 02-2240-0172, 0191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2026-192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년 물가안정용 정부 비축수산물 운송용역(제주수매분)
- 계약구분: 총액(단가)계약
- 계약방법: 일반용역계약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단가)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 불가
- 세부품명: 기타물품운송서비스
- 추정운송물량: 1,000톤
- 추정금액: 14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익일 이내 (세부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 수요기관: 수협중앙회 정부비축사업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1-1 세부품명 및 수량

- 입찰금액 (투찰방법 : 구간별 단가에 추정물량을 곱한 금액의 합)

인수도 조건에 따라 산출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각 구간별 톤당 단가(부가세포함)에 추정물량을 곱한 금액의 합산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상차지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지시한 각 지역의 방출처로 인도

- 계약단가 결정

구간별 계약단가는 아래의 식에 의하여 산정함(십원단위 이하 절사)

$$\text{운송 구간별 계약단가} = \text{구간별 기초금액} \times (\text{낙찰금액} \div \text{기초금액})$$

- 당해구간 기초금액은 붙임의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세부품명 및 물량·수량

구분	출발지	도착지	냉동수산물	비고
			물량	
이고	제주	감천(물)	350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19
		천안(물)	61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봉황로 133
		호남FDC	40	전남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4길 29

※ 지명으로 적시된 출발지 및 도착지는 구체적인 주소 특정 불가

상기 물량은 연간 예상물량으로 실제물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창고별 운송물량은 방출예정물량을 감안하여 수시로 정해지는 바, 평균운송물량 초과 시 운송감량 요청은 불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8/10 16: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18 10:00**
- 개찰일시: **2026/08/18 14: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주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7603)]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7605)]**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운반업으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일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및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입찰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보유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심사 대상 통보 시 심사 기준에 따라 제출
 - 가.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관련 허가증
 - 다. 최근 5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첨부 필요
 - 라. 참가업체의 차량명세 현황
 - 보유현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검사 합격증명서
 - 마.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바. 신인도 평가기준 서류
 -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아.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자.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보증기관의 전자보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3항 6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를 면제합니다. 납부 면제에 해당할 경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동법 37조2항 각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의2]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 실적의 당해 용역 규모
 - 금액기준 평가 [전체 기준금액 : 148,4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이행 실적 인정범위

심사항목	내 용	비 고
동등이상용역	일반화물자동차 냉동수산물 운송 용역	
유사용역	일반화물자동차 냉동식품 운송 용역	

-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동등/유사용역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만 인정합니다.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므로 실적증명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결격사유**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별표 5의2]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5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본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

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위 항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인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인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본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본회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403)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